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5- 2025030050호

# 2025년 구미시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

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2025년 **구미시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**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3. 24.

#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명: 2025년 구미시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
- 지원규모: 89백만원
- O 지원내용: 중소기업의 기업자금 융자담보용 신용보<del>증수수</del>료 지원
- 지원대상: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
- 지원규모: 기업당 최대 1백만원 한도
  - 보증액(지급보증 한도 내) 보증료율 1% 한도 내에서 최대 1백만원 한도 (자금 소진시까지)
  - 한도액 지원 후 2년간 휴식년 적용
- 지원방법: 기업이 신용보증수수료 선(先)납부 후 신청
  - 구비서류: 신청서, 보증료 납부영수증, 통장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(사 업자등록증명원) 등 제출
- **공고 및 접수기간**: 2025. 3. 24.(월) ~ ※ 예산소진 시 까지

# □ 세부사항

#### 1. 지워대상

- 가. 관내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
  - 본사·주사무소 또는 주사업장이 구미시에 소재
  - O 업종은 제조업 등 12개 업종

구 분	업 종
일 반 (업종별 자세한 사항은 신청 구비서류 참조)	① 제조업(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동일 시·군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)
	② 건설업(등록증 보유업체) ③ 전기공사업(등록증 보유업체)
	④ 정보통신공사업(등록증 보유업체) ⑤ 소방시설업(등록증 보유업체)
	⑥ 운수업(운송사업허가증, 등록증, 면허증 보유업체)
	※ 단,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, 여행알선·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
	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
	⑧ 호텔업, 휴양 콘도미니엄업, 전문휴양업, 종합휴양업, 관광유람선업
	(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)
	⑨ 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
	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
	(단, 자동차 전문정비업,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)
	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'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
	과학기술 서비스업체
	① 소프트웨어업(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업체)

### 나. 지원제외: 다음 각 호 해당 기업

- O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
- 휴·폐업 중 및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
- 자금횡령 등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※ 동일대표자가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체만 지원 가능
- ※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받고 업체명을 변경한 경우 동일업체로 판단

# 2. 지원내용

-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대출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
  - 기업이 신용보증수수료 선(先)납부 후 신청
  - 신용조사수수료는 지원 제외

- 기업자금 외 기타 목적 융자 담보건은 미지원
- 특히 기존대출금 대환 목적 융자 담보건은 미지원
- **융자담보**: 해당 대출취급 은행에서 실시한 융자의 담보
  - 대출취급 은행(13개소): 기업, 농협은행(지역농협 제외), iM뱅크(구 대구 은행), 국민, 산업, 신한, 스탠다드차타드, 우리, KEB하나은행, 부산, 경남, 수협, 새마을금고
- 신용보증기관: 국내 보증기관 ※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경북신용보증재단 등
- 지원액: 보증액의 보증료율 1% 이내(기업별 최대 1백만 원)
  - 중소기업 운전/시설자금 일반업체 적용
- 2025년 1월 이후 신용보증수수료 납부건만 신청 가능※ 한도액 지원 후 2년간 휴식년 적용

#### 3. 지원방법

- 접수기간: 2025년 공고일로부터 ~ 예산소진 시 까지
- 접수방법: 이메일(tlsdk484@gepa.kr)/방문 신청(우편접수 불가)
- 접수장소: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
  - 신청 및 문의: 054-470-8557, 8550
  - ※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만 접수 가능

## 4. 구비서류

- ① 지원신청서 및 신청 서식 각 1부(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)
-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(사업자등록증명원) 1부
- ③ 국세 납세증명서(공고일 이후 발급분) 1부
- ④ 지방세 납세증명서(공고일 이후 발급분) 1부
- ⑤ 금융기관 발행 대출 확인 서류(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) 1부

- ⑥ 신용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1부
- ⑦ 통장사본 1부
- ⑧ 중소기업확인서 1부(필요시 징구)
- ⑨ 법인 등기부등본**(말소사항 포함)** 1부(개인사업자 제외)
- ① **전년도**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서(해당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전년도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1부